



# 동탄 파크릭스 A55BL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023.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사양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료 시스템 개편은 2023.05.01.까지 완료 예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및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동탄 파크릭스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동탄파크릭스.com) 및 관리를 병행 운영합니다.
  - 동탄 파크릭스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응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동탄파크릭스.com)를 통해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 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처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 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당첨처(예비입주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 입장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안내**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 검증에 관한 당첨처 서류 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리가 제한됩니다.
    -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다.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 시 관리가 제한됩니다.)
    - 라. 견본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 소독, 방목록 작성 및 신분 확인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마.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바.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마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당첨처 사전 자격확인 서류 접수 기간**
  - 2023년 04월 21일(금) ~ 2023년 04월 24일(월) 4일간 오전 10시 00분 ~ 오후 4시 30분

- ▶ **특별공급 신청일**
  - 견본주택 특별공급 신청 일정 : 2023년 04월 10일(월) 10:00 ~ 14:00(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접수 및 그 외 모두 불가함)
- **본 아파트는 안산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련 일정 제한 등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31-378-4034)를 운영할 계획이나 간혹 쪽쪽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031-378-4034)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는 청약료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 - 7653(2023.03.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14개동 총 660세대

[특별공급 308세대(일반(기관추천) 44세대, 다자녀가구 66세대, 신혼부부 89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89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계	일반	최하층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 000022	01	074.7938	74	74.7938	21,2678	96,0616	45,0667	141,1283	66.4961	48	5	10	1	10	31	17	4	
		02	084.9061A	84A	84.9061	23,6548	108,5609	51,1597	159,7206	75.4865	221	22	22	44	7	44	139	82	16
		03	084.9419B	84B	84.9419	23,6692	108,6111	51,1813	159,7924	75.5183	173	17	17	35	5	35	109	64	11
		04	097.9688A	97A	97.9688	26,8304	124,7992	59,3036	183,8298	87.1000	184	-	8	-	3	-	11	73	6
		05	097.8720B	97B	97.8720	28,1555	126,0275	58,9724	184,9999	87,0140	55	-	6	-	2	-	8	47	3
		06	097.8973C	97C	97.8973	27,1296	125,0269	58,9875	184,0144	87,0365	28	-	3	-	1	-	4	24	2
		07	110.7034A	110A	110.7034	29,7053	140,4087	66,7039	207,1126	98,4218	48	-	5	-	1	-	6	42	4
		08	110.6914B	110P1	110.6914	33,7896	144,4810	66,6966	211,1776	98,4112	1	-	-	-	-	-	-	1	-
		09	110.9467C	110P2	110.9467	31,3825	142,3292	66,8504	209,1796	98,6381	2	-	-	-	-	-	-	2	-
합계											660	44	66	89	20	89	308	352	46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074.7938	084.9061A	084.9419B	097.9688A	097.8720B	097.8973C	110.7034A	110.6914B	110.9467C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74	84A	84B	97A	97B	97C	110A	110P1	110P2

- **주택형의 구분은 공사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을 중간의 평형 대신 널로 표시 변경신청인 제비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평형 화성분방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량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공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주차장, 기시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소수점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비미터(㎡)로 표현되며(면적상용 근계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상용 소 전체 총면적을 버림 처리하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상기 공무상 면적과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무상 정리 절차, 실측결과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 및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조정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비율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소수점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액은 별도의 이자를 간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방식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세 구분	세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납부	지정일			
074.7938	74	48	1	1	4	170,019,642	284,080,358	-	434,100,000	10,000,000	33,41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43,410,000	130,230,000		
				2	4	170,019,642	288,680,358	-	438,700,000	10,000,000	3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131,610,000		
				3	4	170,019,642	273,280,358	-	443,300,000	10,000,000	3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132,990,000		
				4	4	170,019,642	297,980,358	-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5~9	20	170,019,642	291,790,358	-	461,800,000	10,000,000	36,180,000	46,180,000	46,180,000	46,180,000	46,180,000	46,180,000	46,180,000	46,180,000	138,540,000		
				10~12	12	170,019,642	296,380,358	-	466,400,000	10,000,000	3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139,920,000		
				1	16	193,068,623	305,933,377	-	498,100,000	10,000,000	3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49,810,000	149,430,000		
				2	16	193,068,623	310,393,377	-	503,400,000	10,000,000	4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151,020,000		
				3	16	193,068,623	315,853,377	-	508,700,000	10,000,000	4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50,870,000	152,610,000		
4	16	193,068,623	320,393,377	-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5~9	80	193,068,623	336,893,377	-	529,000,000	10,000,000	4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159,970,000						
10~18	7	193,068,623	342,193,377	-	535,200,000	10,000,000	43,520,000	53,520,000	53,520,000	53,520,000	53,520,000	53,520,000	53,520,000	53,520,000	160,560,000						
1	11	193,087,930	285,312,070	-	478,400,000	10,000,000	37,840,000	47,840,000	47,840,000	47,840,000	47,840,000	47,840,000	47,840,000	47,840,000	143,520,000						
2	11	193,087,930	290,312,070	-	483,400,000	10,000,000	3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48,340,000	145,020,000						
3	11	193,087,930	295,412,070	-	488,500,000	10,000,000	3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48,850,000	146,510,000						
4	11	193,087,930	300,512,070	-	493,600,000	10,000,000	3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148,080,000						
5~9	55	193,087,930	315,812,070	-	508,900,000	10,000,000	4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50,890,000	152,670,000						
10~20	74	193,087,930	320,912,070	-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1	5	222,700,442	333,363,963	33,363,595	589,700,000	10,000,000	4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176,910,000						
2	5	222,700,442	339,363,235	33,936,235	596,000,000	10,000,000	4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3	6	222,700,442	345,980,580	34,590,580	602,300,000	10,000,000	5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180,690,000						
4	6	222,700,442	350,817,781	35,081,777	608,600,000	10,000,000	5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182,580,000						
5~9	30	222,700,442	367,908,690	36,790,868	627,400,000	10,000,000	52,740,000	62,740,000	62,740,000	62,740,000	62,740,000	62,740,000	62,740,000	62,740,000	188,220,000						
10~16	32	222,700,442	373,636,963	37,363,595	633,700,000	10,000,000	53,370,000	63,370,000	63,370,000	63,370,000	63,370,000	63,370,000	63,370,000	63,370,000	190,110,000						
1	3	222,480,554	334,290,406	33,429,044	590,000,000	10,000,000	4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59,020,000	177,960,000						
2	3	222,480,554	339,926,770	33,926,676	596,400,000	10,000,000	4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179,820,000						
3	3	222,480,554	345,563,134	34,563,132	602,600,000	10,000,000	5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181,780,000						
5~9	15	222,480,554	362,363,134	36,236,312	617,000,000	10,000,000	52,130,000	62,130,000	62,130,000	62,130,000	62										